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63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8. 26 고성군수
- 나. 회 부 일 자 : 2002. 8. 26
-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2. 9. 4 총무위원회 상정·의결

2. 개정이유

- 100대 국정과제로 시행중인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 및 지침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 누락된 항목은 신설하고 관계 법령이 개정·폐지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여 대주민 행정신뢰 구축과 자치 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제3조(요금)①항 [별표1]의 각항목을 별지와 같이 조정(신설 : 38종, 명칭변경 : 1종, 삭제 : 5종)
-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제7조①항1호 개정
 - 「생활보호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
-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제7조③항 신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제도운영 보완지침에 의거 조항 신설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고성군세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00대 국정과제로 시행중인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과 지침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고성군 조례에 누락된 항목은 신설하고 관계법령이 개정·폐지된 항목은 수정·삭제하여 대주민 행정 신뢰구축과 자치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보완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농·수산업 등과 관련한 신설대상 수수료 항목의 원가분석액에 의한 수수료 확정 예정액 산정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징수대상의 적정성과 확정 수수료의 수준이 타단체와 비교하여 과도한 것은 없는지 등은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이라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신설부분에서 표준안이 있는지, 현실화 한다고 했는데 수수료 요율에 변경 사항이 있는지?
- 답 : 표준지침에 의거 전국 일제히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현 수수료의 변경사항은 없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2. 9. 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